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

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2024. 02.

l ī

과업 개요

1. 사 업 명 :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

2. 사업기간: 2024.06.01.~2025.05.31.(12개월)

3. 사업목적 : 본 용역은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신속, 적법

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

II D

과업지시 내용

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(이하 "병원"이라 한다)과 폐기물 처리 업체(이하 "계약상대자"라 한다) 간 체결된 『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』의 과업지시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1. 배출사업장 개요

1) 배출사업장 :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(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77)

2) 폐기물 예상 발생량

폐기물 종류	연간 예상 발생량	처리방법	비고
의료폐기물	376 ton	소 각	
(폐기물관리법 정의)			

※ 연간 발생량은 본원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로 계약기간 내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음

- 3) 현황 및 특이사항 :
 - ▶ 본원의 창고가 협소하여 골판지 박스 및 비닐은 차량 방문 시마다 공급해야함
 - ▶ 의료폐기물 수거는 주 4회 이상 오전 06:00~07:00 사이에 수거한다.
 - ※ 현재 본원 의료폐기물 수거는 주 4회 시행하고 있음

2. 용역 내용

- 1) 본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관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 4회 이상 수거하여야 하며 보관창고에 보관된 폐기물이 넘치지 않도록 한다.
- 단, 의료폐기물 전월 위탁량의 ±30% 증감사유가 발생될 시 병원의 동의하에 수거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
- 2) 의료폐기물의 수거 시 냉동차량과 작업에 필요한 기구를 이용하여야 하며, 발주처의 폐기물처리 요청이 있을시 요청 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에 수집·운반하여야 한다.

- 3) 의료폐기물은 보관창고와 보관창고 내 냉장시설에서 수거하여야 하며, 그 밖의 병원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시 요청장소에서 수거한다.
- 4)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상차 및 수집·운반 작업 시 "감독원"의 지시와 관련법에서 정한 수집·운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및 작업에 부적합한 자 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- 5) 폐기물의 종류·성상·취급 시 주의사항, 종류별 처리방법 등은 관련법에서 정한기준에 따라야 한다.
- 6)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,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항은 책임당사자가 지며,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7) 의료폐기물의 수집·운반, 처리내역은 폐기물전산입력시스템(allbaro system)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용역비 청구 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.
- 8)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에 필요한 전자태그 및 골판지 용기 (6,12,46,74리터) 및 비닐을 병원의 요구에 의해 즉시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하다.
- 9) 계약상대자는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성 질환에 관한 의료폐기물 발생 시 발주처의 처리요청 시 1시간 이내에 해당 의료폐기물을 수집하여야 하며, 수집방법은 본원의 규정에 따른다.

3. 수집, 운반 방법

- 1) 폐기물 보관장소에 저장된 폐기물의 수거 시 폐기물의 성상·특성별 분류와 상차는 계약상대자가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.
- 2)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에 의거 허가받은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허가대상 이외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.
- 3) 수집·운반 및 처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수집·운반 및 처리 하여야 합니다.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항 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- 4)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적절히 투입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목적으로 발주처의 현장 출입 시 발주자의 보안규정에 따라 인력 및 장비를 감독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.

4. 아저관리

- 1)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2)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중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경우 발주처는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용역수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- 3)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이를 태만히 하여 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된다.
- 4)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, 운반 중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.

5. 행정사항

- 1) 대금의 청구 및 지급
- -.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량에 따른 용역 대금을 계산하여 청구하며 병원은 익월 지정한 날짜까지 대금을 지급한다. 단, 계약사항 불이행시에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2) 비용부담
- -.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(인건비, 납품에 필요차량, 운송비, 운반용기 등)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병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없다.
- 3) 계약 해제 또는 해지 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본 위탁 처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- -.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폐기물 위탁을 거부하는 경우
- -. 계약상대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적정 처리가 우려될 경우
- -. 계약상대자가 「폐기물관리법」을 위반하였을 경우
- -. 기타 계약목적의 달성 및 수행능력이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- 4)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사업 수행 계약기간 내『페기물관리법』이 개정될 경우 해당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
6. 기타 사항

1)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지정된 적법한 장소로 이동처리하여야 하며, 만약이를 위반할 시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처리 될 수 있음

- 2) 용역계약서 및 계약조건상의 문구해석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 하여 결정한다.
- 3)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(변경신고)와 관련되는 제반 사항 등 발주처의 요 구에 적극적 협조를 하여야 한다.
- 4)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처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, 수탁한 폐기물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발주처 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.
- 5) 폐기물 처리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발생한 사고에 대한 행정적,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당사 자가 부담하다.
- 6)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에서 타 업체에 재 위탁처리 할 수 없으며, 위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인적·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처리방법 위반 시 민·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7)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